하남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호 2517

발의연월일: 2022. 10. 19.

발 의 자: 박선미 의원

1. 제정이유

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1조~제3조)
- 나. 종합계획 수립·시행, 실태조사 실시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
- 다. 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근거를 명시함(안 제7조)
- 라. 위원회의 설치·운영과 수당에 대해 규정함(안 제8조~제9조)
- 마.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(안 제10조)
- 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- 4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- 5. 입법예고 결과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2. 10. 20. ~ 10. 25.

나. 의견 내용 : 의견없음

6. 부서협의 결과 : 특이사항 없음

하남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영유아보육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하남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5조(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
 - 2.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 - 3.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- 4.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종합계획은 법 제11조제1항과 「하남시 보육 조례」에 따른 보육계획 또는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- 제6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,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「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7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
 - 2.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 사업
 - 3.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
 - 4.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
 -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8조(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

하남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 운영할 수 있다.

- 1.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- 2.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- 3.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「하남시 보육 조례」에 따른 하남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.
- 제9조(회의수당 등)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영유이보호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영유아" 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
- 2. "보육"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·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 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.
- 3. "어린이집" 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.
- 4. "보호자" 란 친권자·후견인,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- 5. "보육교직원"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,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,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·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.

제11조(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,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.

별첨

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

(2022. 10. 11. 현재)

연번	자치단체명	법 규 명	제 정 일	소관부서	비고
1	충청북도	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	2022-04-08	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	
2	서울특별시 구로구	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22-03-31	생활복지국 여성정책과	
3	대구광역시 달서구	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	2022-03-21	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	
4	서울특별시	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21-12-30	보육담당관	
5	전라북도	전라북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	2021-11-03	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	
6	경기도	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	2021-08-10	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	